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7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김우영 · 김남근
박홍배 · 양부남 · 민형배
이수진 · 김현정 · 이훈기
김 윤 · 이재관 · 이병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. 또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.

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,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,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.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및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견지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, 근무시간 외에 그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
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(안 제44조, 제45조 및 제5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070호)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07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”를 “제7호의2, 제7호의3 및 제13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”를 “제1항제7호, 제7호의2 및 제13호에”로 한다.

1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교육감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

제4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.

제5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 및 제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제4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기간 동안 휴직한 교원
2. 근무시간(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포함한다) 외에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제44조(휴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7호의2, 제7호의3 및 제13호의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교육감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
② 삭제	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임면권자(任免權者)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	④ -----제1항 제7호, 제7호의2 및 제13호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휴직기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 제53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 계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선거 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 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53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 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 및 제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<u>1. 제4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기간 동안 휴직한 교원</u> <u>2. 근무시간(시간외 근무 및 공 휴일 등 근무를 포함한다) 외 에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원</u>
--	---